

태국 전자상거래 물품 통관절차(특송/우편)

2017. 7. 18

이철재 관세관

1. 태국(Kingdom of Thailand) 개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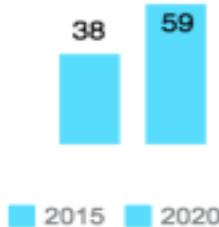
- 인구 : 6,573만명(2015년말)
 - 타이족 85%, 화교 12%, 말레이족 2%, 기타 1%
- 인구 : 6,573만명(2015년말)
- 면적 : 51.4 만 평방킬로미터 (한반도의 2.3배)
- 수도 : Bangkok (인구 995만명)
- 주요 경제지표 (2016년)
 - GDP 4,069억불, 1인당 국민소득 5,815불
 - 무역액 3.925억불 (수출 2,141억불, 수입 1,784억불)
 - 경제성장률 3.2 %, 물가상승률 0.2%,
- 종교 : 불교 94.6%, 이슬람교 4.6%, 기타 0.7%

2. 태국 전자상거래 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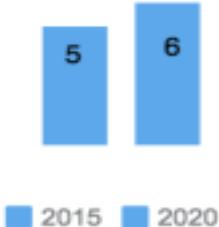
국가별 인터넷 유저(2015-2020)

(단위: million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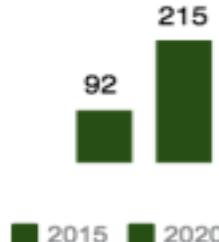
태국
~9% 연평균성장률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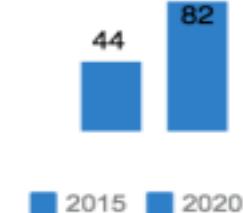
싱가포르
~3% 연평균성장률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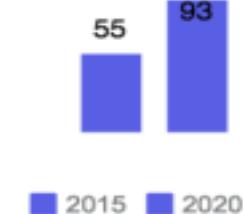
인도네시아
~19% 연평균성장률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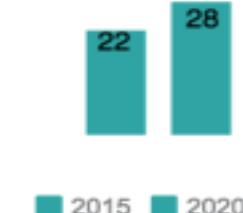
베트남
~13% 연평균성장률



필리핀
~11% 연평균성장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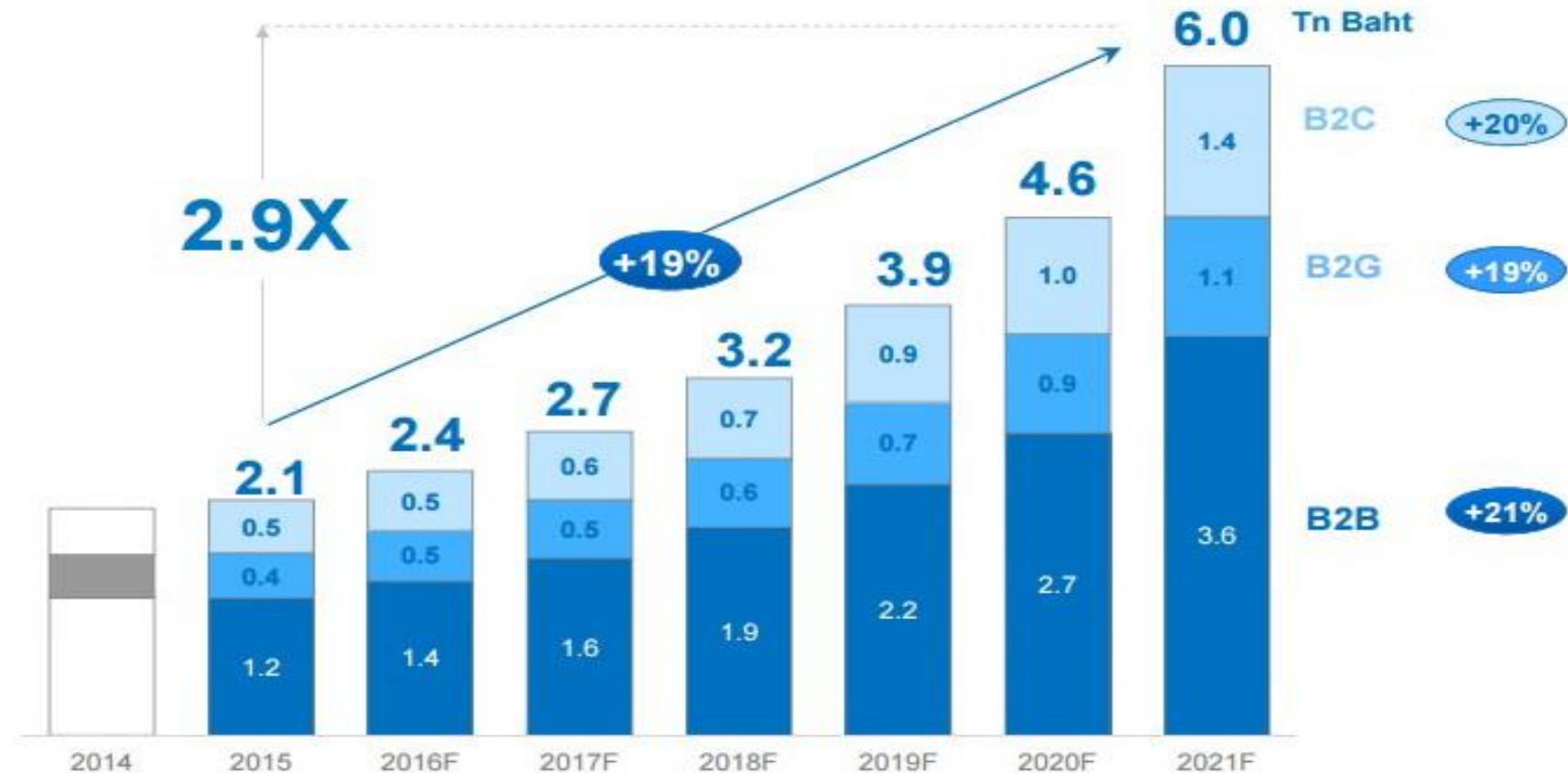


말레이시아
~5% 연평균성장률



2. 태국 전자상거래 현황

e-Commerce Will Expand 2.9X in 6 Years



*Note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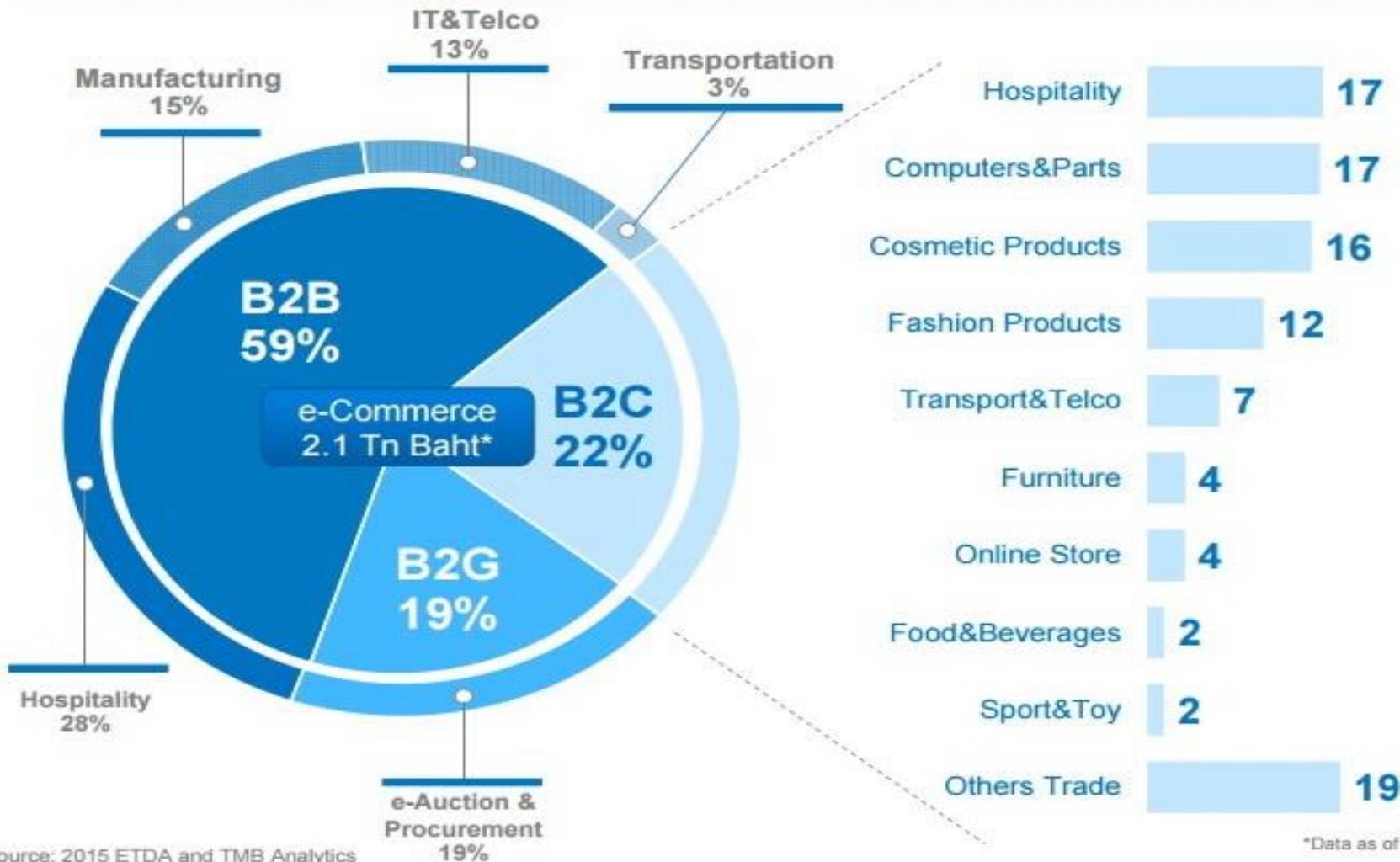
represents compound annual growth rate (CAGR)

Source: ETDA and TMB Analytics

2. 태국 전자상거래 현황

Thailand e-Commerce Sales by sectors

TMB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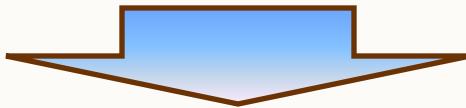
2. 태국 전자상거래 현황

- 11번가의 태국 진출(2017.2.16일)

- 터키, 인도네시아, 말레이지아에 이어 네번째

- 태국 시장 현황

- 전자상거래 규모 15억 달러(1.8조원) -> 2020년 40억 달러 예상
 - 모바일 커머스 비중 : 28->2020년 45% 증가 전망



→ 현지에 직접 진출 할 수 없는 업체는 우편/특송을 활용하여 진출

* 1,500 바트 이하의 특송 면세 물품이 16.5월 대비 17.5월에 약 2.7배 증가

3. 태국 특송 제도

1. 특송 물품의 정의

- 특송물품은 특송업체(Operator)가 수입하는 물품이며, 현재 태국에는 22개의 특송 업체가 있음

2. 통제 정도에 따른 특송 물품의 구분

- Category 1 : 과세대상 아님/전량 X-ray 검사

- 문서

- Category 2 : 면세 물품

- CIF 기준 1,500 바트 이하의 물품
 - 상업적 가치가 없는 샘플
 - 수입금지 품목이나 제한 품목이 아닐것

- Category 2 : 과세대상 물품

- FOB 기준 40,000 바트 이하의 물품
 - 반출전 분석을 요하는 물품이 아닐 것
 - 수입금지 품목이나 제한 품목이 아닐 것

3. 태국 특송 제도

3. 특송 물품 수입신고 주체

- 별도의 세관 등록이 필요없이 특송업체(Operator)가 수입(반입) 신고
- category 1,2,3 외의 물품은 세관에 수입자 등록 후 일반 수입신고

4. 특송 물품의 수입통관 절차

- step 1. 특송 업체는 물품 도착 2시간전에 세관에 목록 제출
- step 2. 세관은 신고 내역을 확인하여 1시간 이내에 검사여부 판단
- step 3. 특송 업체는 수입신고 자료 제출
- step 4. (검사 선별된 경우) 세관 검사후 반출
* 세관 검사비율은 대략 10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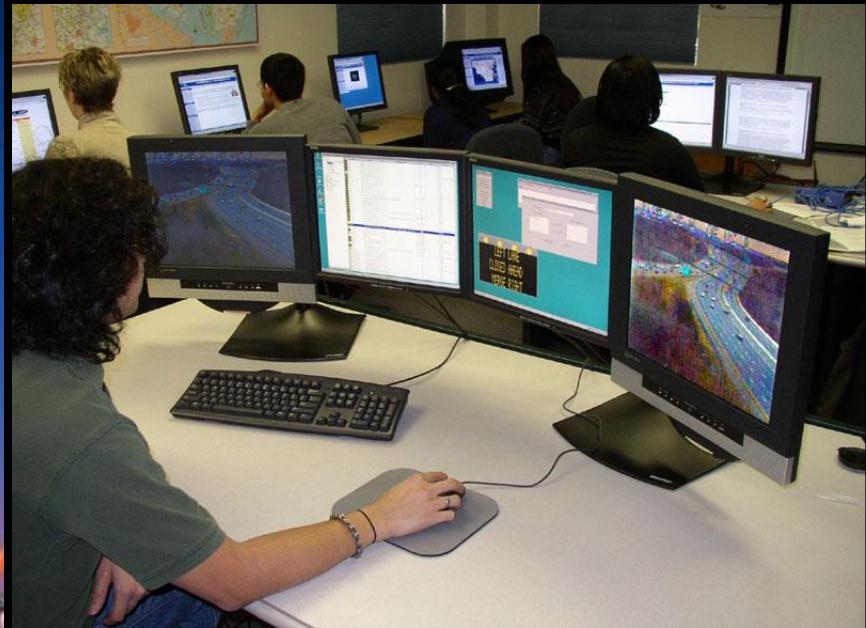
- 처리절차



step 1. 특송 업체는 물품
도착 2시간전에 세관에
목록 제출

step 2. 세관은 신고
내역을 확인하여 1시간
이내에 검사여부 판단

- 처리절차



step 3. 특송 업체는
수입신고 자료 제출



Step 4. (검사 선별된
경우) 세관 검사후 반출

4. 태국 국제 우편물 제도

1. 태국 우편 통관 세관

- 방콕에는 2개의 우편 Center(방콕 국제우편 집중국, Lak si Center)에서 통관

2. 우편 물품의 구분

- Category 1 : 면세 통관 대상 물품

- 1,500qkxm 이하 물품 또는 상업적 가치가 없는 샘플
- 다만, 관련 기관의 수입 인증 등이 요구되는 제한 물품은 제외
- 여기 해당 물품은 우체국에 전달되어 수하인 주소로 배달

- Category 2 : 과세대상 물품

- 우편물 개수에 관계없이 한번에 동일 수하인에게 배달되는 우편물의 총 FOB 가격이 40,000바트 이하의 물품
- 수입금지 품목이나 제한 품목이 아닐 것
- 우편세관과 태국 우정국에서 합동 검사 실시
- 과세액이 결정된 이후에는 우체국에 전달되어 수하인 주소로 배달
- 이때 우편공무원이 세관 공무원을 대신하여 세금을 징수

4. 태국 국제 우편물 제도

- category 2 우편물의 세액 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
 - ① 서면으로 이의 신청
 - ② 세금납부 통지서와 관련 자료를 우편세관에 직접 또는 우편공무원을 통해서 제출
 - ③ 우편공무원에게 세금을 납부 하지 않아야 함
 - ④ 이의 신청후 세관의 검토를 위해 해당 우편물은 우편세관으로 재송부

- Category 3 : category 1,2 이외의 물품

- 우체국 창고에 보관되고 우체국이 세금납부 통지서를 수하인 주소로 송부
- 수하인은 세금납부 통지서 지참, 우편세관을 방문하여 검사 등 통관 절차수행
- 세금 납부 후 우편물 수령
- 40,000바트 초과 물품은 e-Customs 시스템을 통해 정식 수입 신고
- 40,000바트 이하 물품은 세관 공무원이 직접 세금을 수령하고 세금 납부하고 영수증을 발급 받는 간이 절차가 적용

→ 수입제한 품목은 관련기관(FDA, 검역기관 등)의 수입인증·허가를 받아야 함

5. 태국의 통관 환경

가. 관세

○ 태국의 관세율 구조

- 종류 : 기본관세율(법정, 실행), 협정관세율(WTO, FTA), 반덤핑 /상계관세
- 국왕령인 관세율령 : 법정관세율
- 재무부 고시 : 협정관세율, 관세의 경감/면제/추가

○ 태국의 전반적인 실행 관세율이 낮지 않은 수준

- 농산물 평균 실행관세율 22%
- 공산품 평균 실행관세율 8%이나 일부 품목은 높은 수준
 - * 자동차(80%), 오토바이(60%), 특정 섬유제품(60%), 증류주(60%), 가정용전기용품(10-30%), 의약품(10%)

○ 관세율 검색방법 : Integrated Tariff Data(태국 관세청 홈페이지)

나. 품목분류/과세가격 결정 및 분쟁 해결

○ 품목분류 기준

- 국제적 조화를 위해 88년 HS 협약 수용... 관세율령에 반영
- 매 5년마다 동 분류체계 수정작업 → 현재는 HS 2017 사용
- ASEAN 회원국간 분류체계(8단위) 조화를 위한 AHTN 사용

○ 분쟁 해결절차

- 1) 수입자와 일선세관 담당공무원간 협의
- 2) 의견 불일치시 관세청에 품목분류 결정을 요청할 것을 담당공무원에게 요구(물푸반출 희망시 담보 기탁후 반출)
- 3) 관세청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30일 이내
Appeal Committee on Duty Assessment 에 이의제기 신청
- 4) Appeal Committee 는 신청인이 제출한 증거자료와 주장, 관련 법 및 정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
- Committee의 결정에 불복시 30일 이내 법원에 제소

나. 품목분류/관세가격 결정 및 분쟁 해결

○ 2000년부터 GATT 관세가격 평가체제 적용

- 우리나라 관세가격 산정 및 적용순서와 동일(1방법->6방법)
- CIF 가격을 기본으로 하되 판매조건을 이루는 비용과 서비스를 포함한 조정가격 적용
※ 수입자의 신고가격이 의심스럽거나 특정물품에 대해서는 관세청장이 고시한 관세가격을 적용

○ 수입자 vs. 세관간 관세가격결정 분쟁 해결절차

- 1) 수입자와 일선세관 담당공무원 협의
- 2) 불복시 수입제세 담보납부 및 입항지 세관과 협의
- 3) 불복시 Appeal Committee에 이의제기 신청
 - Assessment Notice 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
- 4) Appeal Committee 가 조사·결정 및 서면 통지
- 5) 불복시 30일 이내 법원에 제소

다. 분쟁의 사전 예방 : Advance Ruling

○ 품목분류 사전확인 신청제도

- 두가지 종류 : Type1(수입계획 확정), Type2(수입계획 미확정)
- 태국 관세청 세율국에 신청하며 Type1은 물품설명자료 외에 수입계획 입증서류도 첨부하여 수입예정일 30일전 신청
- Type1은 30일내, Type2는 60일내 회신하며 1년간 유효

○ 과세가격 사전확인 신청제도

- 태국 관세청 세관절차/평가국에 신청
- 제품설명, 거래내용 등 첨부
- 신청서 접수일부터 30일내 결정 통지

라. 관세특혜제도 (Customs Incentive Schemes)

○ Bonded Warehouses

- 8개 유형 : 제조, 선박수리건조, 일반, 전시용 일반, 유류보관용 일반, 면세점, 면세물품보관, 자유지역용 보세창고지역

○ Free Zone : 제조 · 가공업체에 관세 및 내국세 등 혜택 부여

- 수입제세 면제 : 기계·장비 및 부품, 외국물품 등
- 부가세, 주세, 소비세 면제 : Free Zone내 생산 또는 반입 물품
- Free Zone내 재수출물품에 대한 관세면제 등

○ 관세환급

- 수입물품이 수출품의 제조, 혼합, 조립 또는 포장에 사용되고, 수입일로부터 1년 이내 수출된 경우
- 수출일로부터 6월 이내 환급신청해야 함

○ 투자청(BOI) 승인 감면

- 투자자가 수출품 제조를 위한 수입 원자재 등

마. 통관지원 제도

○ AEO 제도

- '13.2월 도입을 완료하여 본격 시행
- 수출입업과 통관대행업 2개 부문으로 나누어 운영
- AEO 업체에 대해서는 통관 및 환급절차 신속화, 경미한 위반 관용 처리 등 광범위한 혜택 부여

○ Customs Care Center

- 제공서비스 : 통관/세관 관련 문의 답변
- 상담방식 : 전화, 인터넷(웹사이트, e-mail), 문서, 방문 상담
- 연락처
 - ☞ 인터넷 홈페이지 : www.customscarecenter.com
 - ☞ 전화 : 1164(국내), +66 2667 6867(국제)
 - ☞ 전자우편 : 1164@customs.go.th

바. 수(출)입 금지 및 인허가 대상

금지물품

- 풍속저해물품(음란물)
- 마약류 및 위조 지폐/증권
- 지재권 침해 물품
- 태국 국기가 새겨진(포함된) 물품
- 위조 태국 왕실 및 공공기관의 Seals
- 장미목(티크) 등

인허가 대상(개별법 또는 상무장관이 고시) 예시

- 유해/화학 물질(Sample 포함) : Department of Industrial Works
- 식품(건강보조식품), 의약품, 의료기기, 화장품 등 : FDA
- 동·식물, 외국환 및 바트화 휴대반출입, 중고자동차, 무기, 폭발물

6. 수입 통관시 유의사항

가. HS 코드 분류

- HS 오류에 의한 과다 벌금 부과 종종 발생 : 사전확인제도 이용 요

나. 사후심사

- 사후 심사 추징시 최대 부족세액의 4배 벌금
- 물품이 통관 되었다 하더라도 세관 당국이 적법하게 통관 되었다고 인정 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(모아서 추징하는 경향)

다. 수입요건 구비

- 수입요건 미구비 물품에 대해 고의에 관계없이 관세법상 몰수 또는 물품가액 상당 벌금 부과 -> 사전 수입요건 철저 확인 요

라. 정확한 서류 구비

- 태국 세관은 FTA 신청물품, 세율 적용, 감면 적용 등에 있어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간 모순이 없는지 꼼꼼히 심사하는 경향

감사합니다.

E-mail : genii444@naver.com